



ICR 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Ltd.

문서 명	ISO9001:2015, ISO14001:2015 기존고객인증전환지침 및 절차
문서번호	QP-32
개정번호	0
개정날짜	2015-10-12
권한	AIP/A

비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영문은 모두 참조 본이며 국문에서 검토자와 승인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 또한 참조 본임.

작성	검토	승인	문서적용일
인증 팀	기술이사	대표이사	2015-10-12

1. 목적

기존 ISO9001:2008, ISO14001:2004에 의한 QMS,EMS 인증을 ISO9001:2015, ISO14001:2015에 의한 QMS,EMS 인증전환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범위

해당 절차는 기존 ICR에 의하여 QMS, EMS 인증을 취득한 고객과, 관련경영시스템 인증에 관련된 내부직원 그리고 내부,외부 심사원에 적용된다.

비고 해당 신규규격에 대한 신규인증고객은 해당 절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련규격, 내부절차 및 지침

- ISO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ISO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IAF ID 9 ISO9001:2015 전환기획가이드
- IAF ID 10 ISO14001:2015 전환기획가이드
- QI-26 ISO9001:2015 인증심사지침
- QI-27 ISO14001:2015 인증심사지침
- QP-07a ISO9001:2015, ISO14001:2015 내부인원적격성평가절차
- QI-23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심사에 대한 적격성 지침
- QI-24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심사에 대한 적격성 지침

4. 용어와 정의

아래의 용어는 해당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용어에 대한 정의 또한 본 절차서안에서만 적용된다.

4.1 기존 규격

ISO9001:2008과 ISO14001:2004

4.2 신규규격

ISO9001:2015와 ISO14001:2015

4.3 기존인증고객

ISO9001:2008과 ISO14001:2004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고객

4.4 규격전환인증고객

ISO9001:2015와 ISO14001:2015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을 ICR을 통하여 가지려는 또는 가진 고객

4.5 규격전환인증

ISO9001:2008과 ISO14001:2004의 경영시스템 인증에서 ISO9001:2015와 ISO14001:2015의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전환하는 인증

4.6 규격전환인증심사

ISO9001:2008과 ISO14001:2004의 경영시스템 인증에서 ISO9001:2015와 ISO14001:2015의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전환하는 인증심사

5. 기존인증고객의 인증 유효기간

5.1 ICR에 의하여 ISO9001:2008과 ISO14001:2004의 경영시스템인증을 보유한 기존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인증의 효력은 **2018년 9월 1일**까지 이다.

비고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1일 이전까지 인증을 전환하여야 한다.

5.2 2016년 1월 이후에 ISO9001:2008과 ISO14001:2004의 경영시스템인증에 대한 신규고객의 인증의 만료일은 인증주기와 관계없이 2018년 9월 1일까지이다.

6. 기존규격의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심사

ICR은 2018년 1월 1일부터 ISO9001:2008과 ISO14001:2004의 경영시스템인증에 대한 심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7. 기존인증고객의 전환인증심사 주기 및 심사유형

7.1 규격전환인증심사주기의 시작일은 인정원의 승인아래 정해진다.

7.2 규격전환인증심사주기는 기존인증고객의 인증심사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존인증고객이 인증심사주기 이전 전환인증심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7.3 기존인증고객의 사후 또는 재 인증심사주기 시 이루어지는 심사는 규격전환인증심사와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심사가 아닌 통합심사로 이루어진다.

8. 기존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사전 검토

8.1 2016년 2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기존인증고객의 모든 경영시스템인증 심사 시 심사원은 기존규격에 의한 고객의 경영시스템과 신규규격의 경영시스템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규격전환인증심사의 준비상태와 그 상태의 수준을 검토한다.

8.2 기존인증고객의 규격전환인증심사 사전검토는 보고서양식에 반드시 기록한다.

8.3 해당 검토사항은 차후 규격전환인증심사 시 반영된다.

9. 규격전환인증심사신청

- 9.1 규격전환인증심사는 고객의 경영시스템이 ISO9001:2008과, (또는) ISO14001:2004에 의하여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 9.2 규격전환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고객은 기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주기 이전 ICR의 규격전환인증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ICR에 제출하여야 한다.
- 9.3 ICR의 규격전환인증심사 신청서에 있는 작성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격전환인증심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0. 규격전환인증심사신청에 대한 검토

- 10.1 규격전환인증심사 신청서의 검토는 신규규격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한 ICR의 계약검토자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 진다.
- 10.2 규격전환인증심사의 심사일수 산정은 ICR QI-04 조항8의 규격전환심사 심사일수 산정지침을 따른다.
- 10.3 규격전환인증심사에 배정되는 심사원은 반드시 QP-07a ISO9001:2015, ISO14001:2015 내부인원적격성평가절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0.4 그 밖의 인증심사신청 및 검토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 ICR의 지침 및 절차를 따른다.

11. 규격전환인증심사수행

- 11.1 규격전환인증심사를 수행하는 모든 심사원은 QP-07a 조항 5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11.2 규격전환인증심사는 반드시 QI-26 ISO9001:2015 인증심사지침, QI-27 ISO14001:2015 인증심사지침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11.3 규격전환인증심사수행 기존경영시스템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을 하면서 신규규격에 의하여 변경된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한다.

규격전환인증심사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존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성
- 2) 신규규격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 3) 조직의 문서화된 정보
- 4) 조직이 결정한 조직의 상황

- 5) 신규규격에 의해 결정된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 6) 신규규격에 의한 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 수립 및 운영
- 7) 리스크와 기회의 관리
- 8) 조직의 이해관계자 및 외부제공자의 의사소통 및 관리
- 9) 신규규격에 의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
- 10) 리스크 경영과 환경측면에 따른 기획조치의 효과성 (환경경영시스템)
- 11)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환경측면, 준수의무, 운영기획 및 관리 그리고 준수평가에 대한 프로세스 효과성 (환경경영시스템)

11.4 그 밖의 심사수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 ICR의 지침과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2. 규격전환인증결정

- 12.1 규격전환인증에 대한 인증을 결정하는 ICR의 내부인원은 반드시 QP-07a 조항 6을 충족하여야 한다.
- 12.2 규격전환인증에 대한 인증을 결정하는 ICR의 내부인원은 반드시 QI-26 ISO9001:2015 인증심사지침, QI-27 ISO14001:2015 인증심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12.3 인증결정과 관련된 기타 다른 요구사항은 ICR의 기존 지침 및 절차를 따른다.